

벤처디자인연구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문화콘텐츠에 관한 관련지식 및 기술의 연구개발, 산학협력, 인력양성 등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를 실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 본 연구센터는 호서대학교 벤처디자인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호서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 3 조 (사업) 본 연구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 문화콘텐츠 연구 개발
2.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3.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 등 각종 연구진흥 사업 수행
4. 기술지도,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등 각종 산학협력 사업 수행
5. 학부·대학원생 등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
6. 국내·외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과 제공
7. 산업체 기술인력의 수탁교육
8.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수행
9. 기타 연구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

제 2 장 조 직

제 4 조 (조직) 연구센터에는 각종 위원회와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 게임연구소
2. 애니메이션연구소
3. 시각디자인연구소
4. 문화기획팀
5. 매체제작팀

제 5 조 (구성) 연구센터에는 아래와 같은 구성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 : 1명
2. 연구소장 : 3명
3. 팀장 : 2명
4. 연구원 : 약간 명
5. 행정보조원 : 약간 명
6. 조교 : 약간 명

제 6 조 (임원)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1명, 연구소장 3명 및 팀장 2명을 임원으로 둔다.

제 7 조 (임명) ① 센터장은 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연구소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팀장, 연구원, 행정보조원 및 조교 등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직무) ①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연구소장 및 팀장은 관련 부서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3 장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제 9 조 (제위원회) 연구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 가.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연구방향의 설정, 예·결산 및 사업계획, 기타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각 연구소장, 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기타 위원은 타 기관의 전문인사 중에 센터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 중 간사를 둔다.
- 라.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마.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

- 가. 센터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나.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사회·경제단체의 장, 관련 산업계의 인사 및 국내·외 교육기관과 연구소의 관계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 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운영 및 재정

제 10 조 (재정) ① 연구센터의 재정은 각종 지원금, 연구비, 용역비, 사업수익금, 기타 기부금 및 창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11 조 (보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문화콘텐츠사업단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재산의 귀속) 연구센터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대학교에 귀속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세칙)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